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594

발의연월일: 2025. 1. 16.

발 의 자:이해민·김재원·김준형

차규근・강경숙・신장식

김 현 • 조인철 • 한민수

민형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 공사의 경우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상 수급인에 대한 대가 지급의 규정을 두고 있고, 민간 공사의 경우에도 건설공사 및 소방공사에는 발주자가 공사대금 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민간이 발주하는 정보통신공사에 대해 수급인의 계약이행 보증이나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 보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계약당사자간 민사 소송 등 불필요한 분쟁이 잦은 실정임.

이에 발주자가 수급인으로부터 계약이행 보증을 받는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험 가입비용 등을 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의무화하여 정보통신공사의 공정한계약이행과 발주자, 수급인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26조의 2 및 제78조제1항제4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 ① 수급인이 국가등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로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때에는 발주자도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에 상응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계약의 이행보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험료 또는 공제료(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② 발주자 및 수급인은 소규모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의경우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의 보증이나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아니할 수 있다.
- ③ 발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인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발주자에게 그 이행을 촉구하고 공사를 중지할 수 있다. 발주자가 촉구한 기간 내에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인은 도급계

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수급인이 공사를 중지하거나 도급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 중지나 도급계약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의 보증이나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78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의 보증이나 공사대금의 지급 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 행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대금 지급의 보증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6조의2(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 ① 수급인이 국가등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로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때에는
	발주자도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
	가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하기 곤란한 경우
	에는 수급인이 그에 상응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
	도록 계약의 이행보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험료 또
	는 공제료(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 및 수급인은 소규모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경우 제1항에 따른 계약
	이행의 보증이나 공사대금의 지
	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
	료등의 지급을 아니할 수 있다.
	③ 발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공사
	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아니한 때에는 수급인은 10일이내 기간을 정하여 발주자에게 그 이행을 촉구하고 공사를 중지할 수 있다. 발주자가 촉구한기간 내에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인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수급인이 공사를 중지하거나 도급계약을 해지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하지

- ④ 제3항에 따라 수급인이 공사를 중지하거나 도급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 중지나 도급계약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의 보증이나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과 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 다.

제7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1. ~ 4. (생 략)

<신 설>

제78조(과태료) ① -----

---.

1. ~ 4. (현행과 같음)

<u>4의2.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u>

	계약이행의 보증이나 공사대
	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정당
	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
	<u>한 자</u>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